

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들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당사 정관 제 22조에 의거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년 03월 31일 (화) 오전 10시 00분

2. 장 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B1 대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

- 보고안건 : 영업보고,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- 부의안건 :

· 제1호 의안) 제9기(2025.01.01~2025.12.31)별도 및 연결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

· 제2호 의안)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별첨)

· 제3호 의안) 현금배당 승인의 건

※ 배당금액 : 보통주 1주당 478원

· 제4호 의안) 이사 보수한도 설정의 건

· 제5호 의안) 감사(위원) 보수한도 설정의 건

· 제6호 의안)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

4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가. 직접행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원본만 인정)

나. 대리행사 : 위임장(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
위임인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
- 위임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- 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- 위임인의 인감날인(개인인감 또는 법인인감)

2026년 02월 26일

에스엔시스 주식회사

대표이사 배 재 혁 (직인생략)

대표이사 황 외 열 (직인생략)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2 조 (목적)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.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3. 전기회로 개폐,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4.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5.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6.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7. 금속탱크,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8.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9.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0.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1.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2.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3.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14. 선박 건조업 15.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16. 송전 및 배전업 17.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8.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9.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0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21.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2. 부동산 임대업 23. 선박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4. 선박 수리업 25. 선박배관 설치공사업 26. 증류기,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7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	<p>제 2 조 (목적) 1 ~ 26 (좌동) 27.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.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.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</p>	<p>- 무인운반차 및 자율주행 - 물류로봇 관련 - 선박용 이중연료 공급설비 및 LNG 병커링 설비 제조업 관련 - 대차와 운반기구 제조업 관련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24 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</p>	<p>제 24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①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.</p>	<p>주주총회 출석 방식</p>
<p>제 29 조 (의결권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③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29 조 (의결권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</p>	<p>전자문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정</p>
<p>제 33 조 (이사의 수)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둔다. 이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 33 조 (이사의 수)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둔다. 이중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상법 개정 반영</p>
<p>제 37 조 (이사의 의무)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③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</p>	<p>제 37 조 (이사의 의무)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④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상법 개정 반영</p>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⑤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
<p>제 46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0 조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③감사위원회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④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⑤제 3 항?제 4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제 46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0 조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사이어야 한다. ③감사위원회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④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⑤제 3 항?제 4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상법 개정 반영</p>

添附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47 조 (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)</p> <p>① 제 46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	<p>제 47 조 (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)</p> <p>① 제 46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 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	<p>상법 개정 반영</p>